

동반성장론(협력) 통합약정서(동반협력기업용) 개정대비표

1. 주요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비고
<p>동반성장론(협력) 통합약정서 (동반협력기업용 - 상환청구권 없음)</p> <p>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p> <p>제 1 조 거래조건 ~ 제 7 조 기타 특약사항 (기재생략)</p> <p>동반성장론(협력) 추가약정서 (동반협력기업용)</p> <p>제 1 조 (목적) ~ 제 4 조 (입금계좌) (기재생략)</p> <p>제 5 조 (상생매출채권의 발행)</p> <p>①(기재생략)</p> <p>1. 상위기업으로부터 받은 매출채권 발행일의 다음 은행영업일부터 (1 차협력기업이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은행과 구매기업이 약정한 상생매출채권발행가능일부터) 매출채권 만기일 전 은행영업일까지 하위기업과의 상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상생매출채권을 하위기업에게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정채권 만기일 당일에는 상생매출채권을 발행 할 수 없습니다.</p> <p>2. 본인이 하위기업에게 발행하는 상생매출채권의 만기는 상위기업으로부터 받은 매출채권의 만기일과 동일하거나 그 이후로 하며, 상위기업으로부터</p>	<p>동반성장론(협력) 통합약정서 (동반협력기업용 - 상환청구권 없음)</p> <p>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p> <p>제 1 조 거래조건 ~ 제 7 조 기타 특약사항 (현행과 같음)</p> <p>동반성장론(협력) 추가약정서 (동반협력기업용)</p> <p>제 1 조 (목적) ~ 제 4 조 (입금계좌) (현행과 같음)</p> <p>제 5 조 (상생매출채권의 발행)</p> <p>①(현행과 같음)</p> <p>1. 상위기업으로부터 받은 매출채권 발행일의 다음 은행영업일부터 (1 차협력기업이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은행과 구매기업이 약정한 상생매출채권발행가능일부터) 매출채권 만기일 직전 은행영업일까지 하위기업과의 상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상생매출채권을 하위기업에게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정채권 만기일 당일에는 상생매출채권을 발행 할 수 없습니다.</p> <p>2. 본인이 하위기업에게 발행하는 상생매출채권의 만기는 상위기업으로부터 받은 매출채권의 만기일과 동일하거나 그 이후로 하며, 최장 만기일은</p>	<p>용어 수정</p> <p>외상매출채권</p>

<p>받은 매출채권 발행일로부터 최장 180 일 이내로 합니다.</p> <p>3.(기재생략) ②~③(기재생략)</p> <p>제 6 조 (상생매출채권의 취소 및 변경)</p> <p>① 상생매출채권의 취소는 해당 상생매출채권 만기일 전 은행영업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⑥ (기재생략)</p> <p>제 7 조 (하위기업에게 발행한 상생매출채권의 양도승낙)</p> <p>① 본인이 하위기업에게 발행한 상생매출채권에 대하여 은행은 하위기업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직접 그 양도사실을 배달증명부 내용증명(또는 동일한 법적효력을 발휘하는 양도통지방법)으로 본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대하여 본인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p> <p>② (기재생략)</p> <p>제 8 조 (건별대출의 신청)</p> <p>①~③ (기재생략) ④ 본인이 은행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담보매출채권은 그 만기일이 발행일(통보일)로부터 180일 이내인 채권에 대하여만 대출을 신청하기로 합니다. ⑤ 대출가능기간은 상생매출채권별로 채권발행일 이후 3 은행영업일일 되는 날로부터 상생매출채권의 만기일 전 은행영업일까지로 합니다. 다만,</p>	<p>「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p> <p>3.(현행과 같음) ②~③(현행과 같음)</p> <p>제 6 조 (상생매출채권의 취소 및 변경)</p> <p>① 상생매출채권의 취소는 해당 상생매출채권 만기일 직전 은행영업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⑥ (기재생략)</p> <p>제 7 조 (하위기업에게 발행한 상생매출채권의 양도승낙)</p> <p>① 본인이 하위기업에게 발행한 상생매출채권에 대하여 은행은 하위기업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직접 그 양도사실을 배달증명부 내용증명(또는 동일한 법적효력을 발휘하는 양도통지방법)으로 본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대하여 본인은 아래 명시된 사유 등이 없는 한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위기업이 당시까지 납품한 물건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본인이 하위기업에 대하여 그 납품대금을 변제하는 등 납품대금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3. 본인이 하위기업에 대하여 반대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통보를 할 때까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4. 하위기업의 채권자로부터 (가)압류가 있거나 하위기업이 제 3 자에게 매출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통지한 경우 5. 전산조작오류 등 매출채권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6. 기타 본인이 하위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채무의 성립, 존속,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p>② (현행과 같음)</p> <p>제 8 조 (건별대출의 신청)</p> <p>①~③ (현행과 같음) <삭제> ④ 대출가능기간은 상생매출채권별로 채권발행일 이후 3 은행영업일일 되는 날로부터 상생매출채권의 만기일 직전 은행영업일까지로 합니다. 다만,</p>	<p>만기일 단축에 따른 문구 수정</p> <p>용어 수정</p> <p>소비자에게 불리한 문구 수정 (예외 사항 추가)</p> <p>외상매출채권 만기일 단축에 따른 삭제 채상 및 용어 수정</p>
---	---	---

<p>원청채권의 만기일 당일에는 구매기업이 원청채권을 결제하여 결제대금이 에스크로계좌에 예치된 이후부터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p> <p>⑥ (기재생략)</p> <p>제 9 조 (세금계산서 등 서류의 제출) (기재생략)</p> <p>제 10 조 (상생매출채권의 결제 및 대출상환)</p> <p>① (기재생략)</p> <p>1. 원청채권 만기일 전 은행영업일까지 동반협력기업이 대출을 받은 금액은 해당 대출금의 기일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원청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의 결제대금으로 우선 상환 하며, 구매기업이 만기일에 외상매출채권 대금을 결제하지 않을 경우에도 본인은 대출금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기로 합니다.</p> <p>2.~4. (기재생략)</p> <p>②~④ (기재생략)</p> <p>제 11 조 (대출취급 및 상생매출채권 발행의 제한) ~ 제 20 조 (본 추가약정의 효력) (기재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서(기업용) (포괄계약)</p> <p>(기재생략)</p>	<p>원청채권의 만기일 당일에는 구매기업이 원청채권을 결제하여 결제대금이 에스크로계좌에 예치된 이후부터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p> <p>⑤ (현행과 같음)</p> <p>제 9 조 (세금계산서 등 서류의 제출) (현행과 같음)</p> <p>제 10 조 (상생매출채권의 결제 및 대출상환)</p> <p>① (현행과 같음)</p> <p>1. 원청채권 만기일 직전 은행영업일까지 동반협력기업이 대출을 받은 금액은 해당 대출금의 기일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원청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의 결제대금으로 우선 상환 하며, 구매기업이 만기일에 외상매출채권 대금을 결제하지 않을 경우에도 본인은 대출금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기로 합니다.</p> <p>2.~4. (현행과 같음)</p> <p>②~④ (현행과 같음)</p> <p>제 11 조 (대출취급 및 상생매출채권 발행의 제한) ~ 제 20 조 (본 추가약정의 효력)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서(기업용) (포괄계약)</p> <p>(현행과 같음)</p>	<p>채상</p> <p>용어 수정</p>
---	--	------------------------

2. 개정 시행일: 2019년 7월 4일

3. 기 거래 고객에 대한 적용: 적용